

영등포구의회
제14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10. 13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8. 10. 6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폐지(제안) 이유
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폐지법률이 2008.3.28 공포·시행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■ 주요골자

-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
- 다만,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2009.1.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고자 함
(안 부칙제1조·제2조)

■ 관련법규
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폐지법률
(2008.3.28. 법률 제9051호)

■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서울특별시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, 조례 폐지는 적절한 조치이며, 조례 시행 시기를

2009년 1월 1일로 하는 안 부칙 제1조는 기반시설 환급조치 등
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
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10. 13

보 고 자 : 이 남 식